

「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안진희

나. 제안이유

- 자녀의 완전돌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무명: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
- 추진근거
 -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, 제27조
 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, 제17조
 -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, 제38조
- 위탁사무
 - 구직, 경력단절여성 등 인적자원 모집 및 개발
 - 보육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

- 구인 희망 기업(사업체) 발굴 및 구직자 연계
 - 취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, 직업교육훈련 등
 - 기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위탁기간: 2024년 ~ 2026년
- 소요예산: 527백만원(도 263.5 시 263.5) *2024년 사업비(5개월분)
- 사업개요
- 기 간 : 2024년 ~ 2026년
 - 대 상
- 구인처: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
 - 구직자: 경력단절, 취업희망 여성(영유아,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)
- 위탁방법: 공개모집
 - 수탁기관: 보육실, 사무실,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, 취업상담·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과 취업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
 - 사업내용
- 단기일자리 매칭 : *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형태

오프라인	온라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인처 모집 : 상공회의소, 관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한 홍보, 모집 • 구직자 모집 : 여성인력개발센터,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등 교육생, 내방객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, 춘하추동 취업한마당 등 참여자 대상 사업 안내, 모집 ⇒ 단기일자리 사업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플랫폼을 활용한 구인처 및 구직자 모집 홍보 (*시청·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, 워크넷 등) ⇒ 단기일자리 사업 연계

- 지원내용 : 유형 I, II 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원

유형	지원대상	지원금	비고
I	출산·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(3개월 이내)	인건비 100%	*최저임금×최대8시간
II	소규모 사업장 단기인력 제공(3개월 이내)	인건비 50%	

* 유사 중복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제외

- ⇒ 고용노동부 출산·육아 지원제도(육아휴직급여, 6+6 부모육아휴직제, 육아휴직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, 대체인력 지원금)
- ⇒ 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제도
- 취업상담, 교육 : 경력단절예방 사업, 취업상담, 직업능력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연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, 제27조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, 제17조
-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,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동의안은

-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은 경북도내에서 구미시가 최초로 시범운영되는 사업으로,
-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, 단기 일자리 구직자와 구인 희망 사업체를 연계하고

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,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.

- 집행기관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사업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악용, 부정수급 등 사업비 낭비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충분한 사업 준비 필요
-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업무추진 필요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